

의안 번호	제2670호~제2672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5. 10. 23.(목) 10:00
제372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

검토보고서

안건 : 3건(개정안3)

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기은자

목 차

□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□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□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
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70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·삭제·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소하천 점용료 등의 인상을 상한 개선(안 제3조제6항)
 - 소하천 점용료 등의 인상을 상한을 “5%”로 신설
-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 개선(안 제5조제2항)
 -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“연 12회”로 신설
- 하천수사용 및 소하천 유수점용시 배수점용료 징수 삭제(별표1)
- 소하천 점용료 등 감면 규정 개선(별표2)
 - “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점용목적의 상실 정도 및 피해 정도”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

-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 반영

4. 관련법령

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, 제23조 및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제16조, 제32조 및 제3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군민 부담 완화와 행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 감면 사유의 구체화는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.
- 다만, 인상률 상한(5%) 적용 시 물가상승률, 유지관리비 변동 등을 고려해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71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지역개발과장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재공고 · 열람 절차 신설
-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확대 및 기준 명확화
-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· 용적률 완화
- 농공단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
- 자연녹지지역 · 농림지역 등에서의 건축 가능 범위 확대
- “분뇨 · 쓰레기처리시설” 용어를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변경
-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식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변경

4. 관련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은 도시계획 제도의 현실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부합함.
- 특히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건폐율 규정의 완화는 지역산업 ·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일부 지역에서의 건축허용 완화가 난개발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엄격히 운영 할 필요가 있음.
- 다만,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,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72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산림편백과장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, 해당 부담금의 납부 기간 및 미납 시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부담금 납부기간에 관한 규정(제10조제9항)

4. 법적근거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·관리

와 관련한 비용부담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- 특히,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미납 시 징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향후 실제 적용 시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납부고지 절차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며,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→ 개정의 타당성 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